## [서식 예] 조정신청서{손해배상(기) 청구}



# 민사조정신청서

신 청 인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신청인 ⟨★★★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 손해배상(기)청구

## 신 청 취 지

- 1.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,622,25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.
- 2.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조정을 구합니다.

## 신 청 이 유

1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절친한 친구사이로서 20〇〇. 〇. 〇. 〇〇시 〇〇구 〇〇 길 소재 소주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〇〇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신청인은 비록 친한 친구사이였지만 평소 피신청인의 무분별한 씀씀이를 잘 알고 있어 거절하였는데,이에 불만을 품은 피신청인이 느닷없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내리쳐 신청인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순간 피신청인이 주먹으로 신청인의 안면부를 수회 강타하여 신청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.

## 2.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#### 1) 일실수입

신청인은 사고당시 건설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을 하면서 일당 금 70,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일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. 따라서 신청인의 일실수입손해는 금 1,022,252원입니다.

【계 산】

금 1,022,252원{=금 70,000원×22일×0.6638(1개월의 호프만수치 0.9958× 20/30)}

#### 2) 치료비

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소재 ◎◎의원에서 14일간의 입원과 6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 금 600,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.

#### 3. 결론

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,622,252원(일실수입 금 1,022,252원+치료비 금 600,000원)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, 친구사이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감안하여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고 위 청구금액에 대하여만 원만한 조정을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진단서

1. 갑 제2호증 치료비영수증

1. 갑 제3호증 노임명세서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신청서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 20○○.
 ○○.
 ○○.

 위 신청인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### ○○지방법원 귀중



제출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기간	00	)년(☞소멸/	지효일람표 <b>w</b>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		호 한	관련법규	민사조정법
불복절차 및 기간					
비 용	・조정수수료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	
기 타	• 민사조정법 제30조,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,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,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(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다 33690 판결).				

### ※ (1)관할법원(민사조정법 제3조)

- 가.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, 지방법원 지원,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관할로 함.
  - 1.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소재지
  - 2.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
  - 3. 피신청인의 근무지
  - 4.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
  - 5. 손해발생지
- 나. 조정사건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원의 관할로 할 수 있음.
- 다.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손해발생지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조정신청